

790.



국사공 제 2120호
단기 4294년 2월 일

국무원사무처장



의문 特別 申長

국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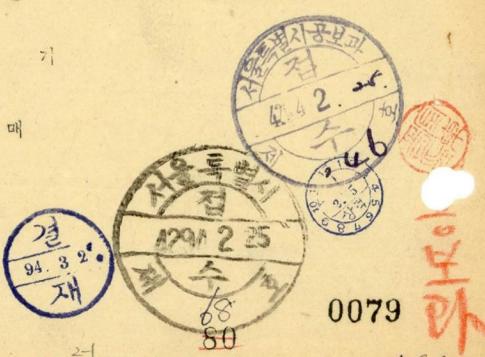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과 각도지사에게 백지등록증 발급의 건

"정당등의 등록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과 도지사에게
위임한 등록사무를 신속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별첨표령에 의거
하여 국무원사무처장명의의 날인된 백지등록증을 배부하오니 사수
하시고 본사무수행에 원만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지등록증

10 매

41 36



0079

791

백지 등록증 발급 및 취급 요령

1. 국무원사무처는 특별시장 및 도지사에게 납인된 백지등록증을
발급한다.
2. 백지등록증을 배부받은,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위임받은 정당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시 해당란에 기재발급한다.
(그러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보고는 규정대로 하여야 함)
3.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배부받은 등록증의 사용전말을 명백히
해두고, 백지등록증을 청구할때 국무원사무처장에게 사용
명세를 보고하여야 한다.
4. 해당란에 기재시 오손 또는 파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현상대로
보관하였다가 전항의 보고시 첨부반환하여야 한다.
5. 배부받은 용지가 부족할때에는 5 매여유를 두고 국무원사무처장
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6. 개인은 특별시와 도의것으로서 관인등록장부에 등록된것으로
납인하여야 한다.

50037

81

0080